



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수신자 : 대한의사협회장
(경유)

제 목 : 「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」 일부 개정 안내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-171호(2023.6.21.)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」 관련입니다.
3. 위와 관련, 「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」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-198호, 2023.7.20.)하오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4. 아울러, 동 공고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(www.hira.or.kr) 「알림-공지사항」 및 요양기관 업무포털(<http://biz.hira.or.kr>) 「자동차보험-알림방-자동차보험 알림방」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
○ 주요 개정내용

- (별표 2) 진료코드

구분	유형	예시
기본코드	진료행위별 대분류코드 신설	AB003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연계 질지원금 신설 등
	진료행위명 변경	치과 집중관리료(1일당), 치과 안전관찰료(1일당) → 치과 집중관리료, 치과 안전관찰료
	코로나19 관련 항목 삭제	AH010 코로나19 폐쇄병동 감염예방·관리료 등
산정코드	산정코드 두 번째, 세 번째 자리 코드 신설	L010200Z 정맥마취(부위(국소)마취) 신경차단술 15회 초과 등

- 붙임 1. 주요개정내용
2. 「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」 일부개정. 끝.

건강보험심사평가원



수신자

결재

담당 김정윤

팀장 이미나

부장 김경화

센터장

전결07/20

최수경

협조

시행 자보기준관리부-1981 (2023.07.20.) 접수
우 2646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60(반곡동) / www.hira.or.kr
전화 033-739-3425 전송 033-811-7343 /k jy0408@hira.or.kr

()

/ 공개